

## 동물용 의약품 + 처방제 이야기

도입 목적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생제 내성문제 해결



안전한 축산물 유통



국민건강 확보



축산업생산성 향상

수의사 처방제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97개 성분 지정

수의사 처방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2013.5.3)한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동물용 마취제

17성분

동물용 호르몬제

32성분

동물용 항생·항균제

20성분

둘째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백신)

13성분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15성분

셋째

원활한 수의사 처방제도 정착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액의 15%정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20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 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합니다!

###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 관련 Q&A

#### Q 모든 동물용 의약품이 처방 대상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에 한 합니다

#### Q 축산농장의 사육단위가 큰 경우 개체마다 일일이 처방을 받아야 합니까?

직접 진료 후 진료 받은 개체에 한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축사 단위로 처방 가능합니다.

#### Q 한꺼번에 여러 건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두고 필요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수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대상약품의 종류와 양을 정할 수 있으나, 여러 건의 처방전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Q 수의사는 처방전만 발급하고, 동물용 의약품은 판매업소에서만 구입하여야 합니까?

직접 진료 한 수의사는 처방대상약품을 조제·판매·투약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가 요청한 경우에 처방 전만 발행하여 판매업소에서 처방대상약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Q 수의사면 누구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처방전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개설된 동물 병원에 종사하는 임상수의사 또는 축산농가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성분명 처방이 무엇입니까?

축산농가의 약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약품명이 아닌 약효를 내는 유효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품명을 함께 권장하도록 하여 축산 농가가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Q 양축농가의 생산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은?

처방에 따라 사용 시 일부 진료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치료효율 향상 및 투약비용 감소 등으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야간이나 휴일에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에서는 동물병원 안내 콜센터 (1877-7002)와 홈페이지 ([www.evet.or.kr](http://www.evet.or.kr))를 통하여 안내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 방역총괄과 tel: 044-201-2352  
● 방역관리과 tel: 044-201-2372